##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04 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이학영·조 국·임호선

한정애 • 김현정 • 박정현

정준호 • 진선미 • 전재수

한민수 · 문금주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, 발생 일시와 장소,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,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 중 "공표할 수 있다"를 "공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	제13조(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
공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	중표) ①
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	
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	
사업장의 명칭, 발생 일시와 장	
소,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	
발생사실을 <u>공표할 수 있다</u> .	<u>공</u> 표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